

『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9년 10월 8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10월 18일

제2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보건행정과장 이 재 근

나. 제안이유

- 행정안전부의 「국민 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」에 따라 정비과제로 발굴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개정된 지역보건법 적용(안 제1조)
- 「지역보건법」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(안 제2조)
-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의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적용(안 제3조)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적용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불필요한 조항 삭제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역보건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정 은

○ 본 『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』은

- 행정안전부의 「국민 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」에 따라 상위법령 상의 과태료 규정에 반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,
- 상위법인 「지역보건법」의 과태료 부과 인용조문을 개정하고, 법 제34조제2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며, 과태료 부과·징수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」에 따르도록 하고 규제법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임.

○ 검토 결과,

-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, 법체계상 혼란을 주거나 관계 법령과 다르게 규정하여 주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과태료 집행상 혼란 방지 및 주민의 권리침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